기상청 공고 제 2020 - 69호

2020년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 2020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,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3일

기 상 청 장

※ 시험당일 09: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,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
1. 시험 일시: 2020. 7. 11.[토] 10:00~11:40(100분)

□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대상자는 (붙임 1) 참고

2. 시험장소 : 서울 여의도중학교

3. 시험장소 오시는 길

□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정도 소요 (붙임 2)

4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시험당일 **09:1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** (07:40 이후 시험실 개방)
 - ※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[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](붙임3)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(출입구 관리)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, 수험생,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(비접촉식 체온계) 실시
- <u>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(</u>발열 37.5℃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)가 있는 수험생은 예비(격리)시험실에서 분리 응시



- 다.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안내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(붙임 3 참고/단, 확진자는 응시 불가).
- 라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.
- 마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 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바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*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- 사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 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. 시험장 내에서는 **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.
- 자. 시험시간 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.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.
- 카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계산, 통신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(스마트워치 등)는 사용 불가
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

- 가. 점수산출은 OMR스캐너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.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을 사용하여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, 가산점 미반영 등)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-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점 등으로 두 개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보기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◇ ◇ ● ● ● ○ ○

- 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, 답안지 **책형란에** 해당 책형을 기재하고 해당란 1개에 "●"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라. 답안은 매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**만을 골라 그 숫자에 "●"로 표기

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**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.
- 다만,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(득점 불인정, 가산점 미반영 등)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▮▮▮▮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 - (필적감정용 기재)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
 - (자필성명) 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
- 바. **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**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.가점.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.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(표기)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※ 특히 아래사항 위반 시 해당시험을 <mark>무효처리</mark> 하오니 **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**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,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하는 행위
 - 책형 및 인적사항,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 사항은 시험 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표기 완료

5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○ **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0. 8. 20(목)에 기상청 홈페이지(www.kma.go.kr)**에 게시합 니다.

6. 가산특전 관련 안내

- 필기시험 가산특전(취업지원대상자, 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 소지자)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0. 7. 10.)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 어야 하며,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(지)청에, 의사상자 등은 보건복지부 등에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 문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, 시험 당일 **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

2020년도 기상직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

□ 시험시간 연장

정규시험시간	1.5배 연장시간
10:00 ~ 11:40 (100분)	10:00 ~ 12:30 (150분)

- 시험시작 시간은 동일하며 종료시각(12:30)만 차이가 있음
- 정규시험시간(11:40) 이후 화장실 사용 허용(단,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)
- ㆍ화장실 사용 시에는 동성의 복도담당 시험관리관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
-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정규시험시간(11:40)이 종료되면 귀가 가능

□대필

- 대필 응시자에게는 답안지를 배부하지 않음
- 응시자는 시험 시간 내 본인의 문제책에 문항별 답안을 표기(시험종료 후 답안 수정 불가)
- 시험감독관은 시험시간 종료 후 인적사항이 기재된 답안지에 옮겨 적음
- 옮겨 적은 내용(문항별 답안·인적사항·책형)을 대조 확인 후 응시자·감독관 각각서명
- ※ 기타 사항은 일반 응시자 준수사항과 동일함

붙임 2 필기시험장 약도



코로나19 대응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및 행동수칙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0년 기상직 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

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응시자 여러분의 건 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1. 시험장 출입금지

○ **환자** 및 감염병 의심자 등 **격리대상자**는 **시험장 출입이 금지**됩니다.

2. 자가격리대상자 응시요령

- **자가격리대상자**가 응시를 원할 경우,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안내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확진자는 응시불가)
 - ※ 신청기한/ 신청방법: 2020.7.3.~7.8.18:00까지/ kainen@korea.kr (문의☎02-2181-0345
- **단순발열, 호흡기 증상** 등이 있는 **수험생(자가격리대상자 제외)은** 신고기한 내에 **건강상태를 자진신고**해 주시면 시험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 - 신청기한/ 신청방법 : 2020. 7. 9.~7.10.18:00까지/ <u>kainen82@gmail.com</u> (문의)☎02-2181-0345 ※ 2020. 7. 10. 18:00이후 자진신고 : <u>kainen82@gmail.com</u>

3. 응시자 협조사항

- 모든 응시자는 **시험 당일** 반드시 **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**까지 계속 마스 크를 **착용**해 주십시오.
 - 단,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.
 - 체온측정 등으로 **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**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
 - 증상확인 후 **발열(37.5°C 이상)** 또는 **호흡기증상자**는 **응시가 제한**될 수 있으며, 다만 불가피한 경우 **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**하여 **응시**해야 합니다.
-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.
-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 호흡곤란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.
-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응시자 행동수칙

- ◆ 시험시작 후 **시험감독관이 실시**하는 **본인 확인 시**에는 **마스크를 잠깐 내리고** 본인여부 확인에 **협조**해야 합니다.
- ◆ 발열, 호흡기 **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**, 반드시 **시험 감독관에게 알려**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시험실 안·밖에서 **불필요한 대화를 자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**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.5m 거리를 확보**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수시로 흐르는 **비누물에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**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**휴지, 마스크는** 시험장에 버리지 마시고, **퇴실 시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**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응시자는 시험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